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Japan 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4.01.01 ~ 2014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증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4. 02. 14	법령개정 제28조	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	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
	법문구명 확화 제47조	①(추가)	①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を 통해  
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4. 04. 14	말소	정승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1년 08월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</li> <li>- 2004년 02월 서울대 재무학 석사</li> <li>- 2004년 01월 ~ 2007년 12월 SK텔레콤 재무관리실 회계팀</li> <li>- 2008년 01월 ~ 2014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</li> <li>- 2014년 02월 ~ 現 삼성자산운용 Passive 솔루션팀</li> </ul>	2110000108

2014. 04. 14	신규	김남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7년 2월 KAIST 산업공학 학사</li> <li>- 2007년 8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팀</li> </ul>	2110000109
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--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 - 해당사항 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